



기업결합사건에 있어서 시장확정의 중요성

— United States v. Engelhard Corp. 사건 —

서헌재 | 중앙대 법대 교수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확정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교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확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¹⁾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 United States v. Engelhard Corp., 1997-2 Trade Cas. (CCH) [para] 71,955 (11th Cir. 1997).



사건의 배경

미 법무부는 젤 형태의 점토제품(gel quality attapulgite clay, 이하 "GQA")의 생산 및 유통업에 있어서 두 선도기업들 간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이라고 보고 동 결합안을 제소하였다. Attapulgite란 점토의 한 형태로서 주로 미국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의 접경지역에서 추출된다. 이런 유형의 점토는 흔히 액체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상품의 제조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문제가 된 상품은 비료, 동물사료, 페인트 등과 같은 산업용 제품들의 농후제로서 사용되었다. 결합 이전에 결합 주체인 Engelhard사와 Floridin사는 각각 40% 정도씩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두 회사 이외에 동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던 중 Floridin의 모기업이 GQA 사업에 손을 떼기로 하면서, Floridin측은 자사의 자산을 Engelhard측에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독점금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서 Engelhard가 제조공정 가운데 하나만을 담당하는 공장을 매입기로 하는 한편, Floridin의 흡수식 점토사업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결합하였다. Floridin의 GQA 사업은 다른 제3의 기업이 인수키로 되어 있었다. Engelhard는 이 제3의 구매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는데, 합작투자의 내용은 Engelhard가 GQA를 합작투자회사에 원가로 공급하고 당사자들은 제조공장에서 나온 생산물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다만 GQA의 유통은 각자 독립적으로 맡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기업결합이 GQA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고 동 결합안을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법무부가 시장획정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법무부 패소의 약식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의 판결

항소심에서 연방 제11항소법원은 원심의 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미 법무부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련시장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문제된 제품에 대해 이른바 SSNPI(소폭이지만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수준의 가격인상)²⁾가 있을 경우 거래선을 바꿀 대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그러한 대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다른 상품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장될 것이다. 법무부는 시장획정을 위한

2) 미 법무부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0.1 at 41, 533, 1.11, at 41, 554-555.



기준으로서 5~10%의 SSNPI를 상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원심이 5~10%의 기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심사기준에 대해 내린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항소법원은 몇 가지 이유에서 미 법무부는 관련시장을 정확히 획정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법무부가 시장의 규모, 특히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수를 정확히 측정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내의 전문가들은 최종제품에 GQA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전체 수를 규명해 내지 못하였다.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오류는 법무부가 제시한 사실관계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면담한 고객들의 수가 어떠한 지에 관계없이 시장의 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전체시장에 대한 예측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GQA가 합성물로서 선택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쟁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GQA 고객들은 GQA 제품들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를 꺼려하였다. GQA가 최종상품의 제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령 GQA 가격이 평균 10%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제품의 전체 비용인상폭은 극히 미미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시장획정에서는 GQA와 다른 산업용 농축제 간의 경쟁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었는데 법무부가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획정에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하급심이 내린 가각판결은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본건의 분석

기업결합사건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시장획정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³⁾ 예를 들어 *Rebel Oil Co. v. Atlantic Richfield Co.*, 51 F.3d 1421, 1534 (9th Cir. 1995) 판결에서는 “관련시장의 획정이 없이는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

3) 이에 대한 문헌으로는, Donald I. Baker & William Blumenthal, *The 1982 Guidelines and Preexisting Law*, 71 *California Law Review*, 1983, p. 311, 322; Jonathan B. Baker, *The Antitrust Analysis of Hospital Merger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Hospital Industry*, *Law & Contemporary Problems*, Spring 1988, p. 93, 199; James A. Keyte, *Market Definition and Differentiated Products: The need for a Workable Standard*, 63 *Antitrust Law Journal*, 1995, p. 697.




있고, *Fleer Corp. v. Topps Chewing Gum, Inc.*, 501 F. Supp. 485, 505 (E.D. Pa. 1980), 658 F.2d 139(3d Cir. 1981) 판결에서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의 타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에는 시장획정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예외적으로 반트러스트 위반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시장획정이 없이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반트러스트법 위반에 대하여 정황적 증거가 아닌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⁴⁾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기업결합사건에서 관련시장획정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는 미 법무부 역시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만 본 건에서 법무부는 관련시장을 GQA 판매를 위한 사후시장으로 획정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이와 같은 시장획정이 두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았다.

먼저 시장획정이 관련시장의 규모를 적절히 계산해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무부가 최종제품에 투입되기 이전의 경쟁을 관련시장획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항소법원은 이미 GQA를 구입한 소비자들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GQA와 다른 산업용 농축제들 간의 경쟁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항소법원의 기각판결은 미 법무부가 경쟁제한성에 관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제품의 합성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상의 방법론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한 가지 항소법원은 특히 시장획정에 있어서 사후시장의 역할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후시장의 중요성은 일찍이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nical Services, Inc.*⁵⁾ 사건이래 의미있게 받아들여져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도 사후시장과 원제품의 판매시장 간의 긴장은 현재까지의 기업결합사건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분석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E.W. French & Sons, Inc. v. General Portland, Inc.*, 885 F.2d 1392, 1402-06 (9th Cir. 1989).

5) 504 U.S. 451 (1992).